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 안 번 호	877
------------	-----

제출년월일 : 2004. 11. 10.

제 출 자 : 이계수위원 외 3인

1. 수정이유

- 2004. 5. 20 제정된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사회복지관련 각종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로 통합하여 날로 증가하는 새로운 사회복지행정수요에 탄력적이고 능률적으로 대처코자
- 기 제출된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중 그 내용이 미흡하거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추가 또는 수정 보완하여 개선코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조례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 조례제정 목적에 관한사항(안 제1조)
- 위원회 기능에 관한사항(안 제2조)
- 위원회 구성에 관한사항(안 제3조)
- 간사 및 서기에 관한사항(안 제9조)

3. 본문 : 붙임과 같음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 을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으로 한다.

안 제1조중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 를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 로 한다.

안 제2조 본문중 “사회복지사업에관한 다음 각호의 1의 기능” 을 “다음 각호의 기능” 으로 하고, 동조 제4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제2항” 으로 하며, 동조 제5호중 “의료급여법 제6조” 를 “의료급여법시행령 제7조제3항” 으로 한다.

안 제3조제1항중 “30인이내로” 를 “30인이내의 위원으로” 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 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로 하며, 동조동항중 제4호 내지 제6호를 제6호 내지 제8호로 하되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5.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안 제8조제5항중 “위원장” 을 “소위원회 위원장” 으로 한다.

안 제9조의 제목 “간사” 를 “간사 및 서기” 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1.-3. (생략) <u><신설></u> <u><신설></u>	1.-3. (제정안과 같음) 4. <u>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u> 5. <u>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u> <u>또는 단체의 대표자</u>
4. (생략)	6. (제정안 제4호와 같음)
5. (생략)	7. (제정안 제5호와 같음)
6. (생략)	8. (제정안 제6호와 같음)
제4조(위원의 임기) (생략)	제4조(위원의 임기) (제정안과 같음)
제5조(해촉) (생략)	제5조(해촉) (제정안과 같음)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생략)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제정안과 같음)
제7조(회의) (생략)	제7조(회의) (제정안과 같음)
제8조(소위원회) ①-④(생략) ⑤소위원회의 회의는 <u>위원장</u> 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④(제정안과 같음) ⑤----- <u>소위원회 위원장</u> ----- ----- -----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및 서기)
제10조(실비지급) (생략)	제10조(실비지급) (제정안과 같음)
제11조(시행규칙) (생략)	제11조(시행규칙) (제정안과 같음)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의료급여법 제6조,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통합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2.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종합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건의
3. 노인·장애인·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심의·건의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 관장 사항의 심의·의결
5. 의료급여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관장사항 심의
6.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사회보장·보건·장애인·노인 및 여성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대한노인회고성군지회에서 추천하는 노인대표
3.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여성대표
4.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5.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6.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7. 공익을 대표하는 자
8.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심신쇠약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1/3 이상 위원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생활보장소위원회, 여성발전소위원회, 의료급여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정·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 선정하되 생활보장소위원회 15인이내, 여성발전소위원회 13인이내, 의료급여소위원회 5인이내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사회복지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사회복지담당자가 된다.
②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1인을 둘 수 있다.

제10조(실비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제3조제9호 및 제14호는 삭제한다.